

# 표시·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## (김도읍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	4522
------------	------

발의연월일 : 2016. 12. 21.

발 의 자 : 김도읍 · 이명수 · 이현승

지상욱 · 이양수 · 김태흠

김성원 · 정태옥 · 조훈현

윤영석 의원(10인)

#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사업자등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고도 이를 따르지 않은 경우의 과태료를 3천만원으로 하여 임시중지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등 다른 과태료(1억원)와 차등을 두고 있음.

그러나 동일한 행위를 한 임원·종업원 등 개인에 대한 과태료는 동일하게 1천만원으로 정하고 있어 형평성이 떨어진다는 의견이 있으므로, 시정명령에 불응한 경우의 과태료를 3백만원 조정하는 등 과태료에 대한 부과기준을 정비하려는 것임.

또한, 사업자등의 조사 거부·방해 또는 기피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한도(사업자등 1억원, 개인 1천만원)는 「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」(사업자등 2억원, 개인 5천만원) 등과 상이하여 법령 간 정합성 측면에서 문제가 있음.

이에 사업자등이 「표시·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공정

거래위원회의 조사를 거부·방해 또는 기피하는 경우의 과태료 부과한  
도를 「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」과 동일하게 정비함으로  
써 과태료의 실효성 및 타 법률과의 정합성을 제고하고자 함(안 제20  
조).

## 표시·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표시·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0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을 제2항으로 하며,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, 같은 조 제2항(종전의 제1항)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호(제5호는 제외한다)의”를 “호의”로, “부과하고,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며, 범인”을 “부과하고, 범인”으로 하며, 같은 항 제5호 및 제8호를 각각 삭제하고,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조 제5항(종전의 제3항) 중 “제1항이나 제2항에”를 “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”로 한다.

① 제16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「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」 제50조제2항에 따른 조사를 거부·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사업자등에게는 2억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, 범인 또는 사업자단체의 임원이나 종업원 또는 그 밖의 이해관계인에게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

③ 제14조제5항에 따른 시정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사업자등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, 범인 또는 사업자단체의 임원이나 종업원 또는 그 밖의 이해관계인에게는 3백만원 이하의

과태료를 부과한다.

## 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0조(과태료) <신 설>	제20조(과태료) ① 제16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「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」 제50조제2항에 따른 조사를 거부·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사업자 등에게는 2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, 법인 또는 사업자단체의 임원이나 종업원 또는 그 밖의 이해관계인에게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
① 사업자등이 다음 각 호(제5호는 제외한다)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,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며, 법인 또는 사업자단체의 임원이나 종업원 또는 그 밖의 이해관계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	② -----호의-----부과하고, 법인-----
1. ~ 4. (생략)	1. ~ 4. (현행과 같음)

<p>5. 제14조제5항에 따른 시정명 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</p> <p>6. · 7. (생 략)</p> <p>8. 제16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「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」 제50조제2항에 따른 조사를 거부·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</p> <p>&lt;신 설&gt;</p> <p>② (생 략)</p> <p>③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부과·징수한다.</p>	<p>&lt;삭 제&gt;</p> <p>6. · 7. (현행과 같음)</p> <p>&lt;삭 제&gt;</p> <p>③ 제14조제5항에 따른 시정명 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사업자등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, 법인 또는 사업자단체의 임원이나 종업원 또는 그 밖의 이해관계인에게는 3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</p> <p>④ (현행 제2항과 같음)</p> <p>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----- ----- ----- -----.</p>
---	---